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적 조사통계 위주의 현행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보고·가공통계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합리화하고,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며, 통계청장 소관의 교육사무 및 통계 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 명확화(안 제2조의3제6호)

나.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통보시기 변경(안 제2조의6제4항)

다.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통계등록부 자료 제공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6조제4호)

라. 조사통계의 자료수집 이후 작성·변경승인(협의) 신청 허용(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6항)

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변경 승인(협의)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에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작성·변경승인(협의) 절차 합리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및 제7항)

1) 통계작성과 관계없이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보고·가공통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수집 전이 아닌 공표 전까지 작성·변경승인(협의)을 신청하도록 함.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은 조사 실시와 관련한 비용, 응답자 부담 등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고·가공통계에 대해서는 판단결과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표 전 사전제공 규정 명확화(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사전제공 요청 시 제공받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함.

2)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제공 요청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문서로 통계작성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함.

사.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이용 요청 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4항)

아. 통계데이터센터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49조의2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6호 중 “동거인·부모”를 “부모”로, “장애”를 “동거인, 장애”로 한다.

제2조의6제4항 중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을 “법 제29조의3부터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을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해 법 제18조 제1항”으로, “조사·보고”를 “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신청을 할”을 “제출할”로, “신청할”을 “제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공표하기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

출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통계작성의”를 “조사통계 작성의”로, “조사·보고”를 “조사”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사통계를 공표하기 20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변경승인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출일정을 통계청장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 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면 공표하기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의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를 “통계청장에게 조사통계 작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조사”로, “하여 통계청장에게”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공포하기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본다.

제42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받으려”를 “제공(이하 이 조에서 “사전제공”이라 한다)받으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공받을 기간(1회 최대 1년으로 한다)

② 사전제공을 요청한 자는 제1항의 문서 제출 이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4항 중 “부담시킬”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부담시킬”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부담시킬”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부담시킬”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를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 및 민간부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 활용 관련”을 “자료 활용과 관련된”으로 한다.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자료간 연계 및 활용 지원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제2호사목9) 위반행위란 9)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 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u>동거인·부모</u> 의 취업 활동, 아동의 <u>장애</u>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8. (생략) ② (생략)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u>부모</u> ----- ----- <u>동거인, 장애</u> ----- ----- --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 ③ (생략) ④ 통계청장은 매년 <u>9월 30일</u>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12월 31일</u> ----- ----- ----- -----.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u>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29조의3부터 제31조에</u>

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생략)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다른 통계등록부 및 -----

--

5. (현행과 같음)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
--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해 법 제18조 제1항 ----- 조사 -----

-----.

----- 제출할 -----

----- 제출할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공표하기 30일 전까지 제1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항 본문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
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

⑤ ----- 제1항 또는 제2항

⑤ (생략)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
----- 조사통계 작성의 -----

--- 조사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사통계를 공표하기 20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변경승인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 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생략)

제출일정을 통계청장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 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면 공표하기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의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

-----.

-----.

⑤ 제4항-----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 통계청장에게 조사통계 작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조사 ----- 하여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공표하기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신 설>

<신 설>

----- 제24조제3항
및 제4항-----.

④ ----- 제1항 또는 제2항

-----.

⑤ -----

----- 제4항-----
--.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⑤ (생략)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제
 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
 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
 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
 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
 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
 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공받을 기간

4. (생략)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본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
 ----- 제5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① -

 ----- 제공(이
 하 이 조에서 “사전제공” 이라
 한다)받으려-----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2. (현행과 같음)

3. 제공받을 기간(1회 최대 1년
 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③ (생략)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생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③ (생략)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생략)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② 사전제공을 요청한 자는 제1항의 문서 제출 이후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요청기관의 장에게 부담시킬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요청기관의 장에게 부담시킬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u>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u> 입수 및 관리 <신 설> 2. ~ 4. (생 략) 5. 그 밖에 <u>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u> 활용 관련 연구·분석 지원 ② ~ ④ (생 략)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u>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및 제6호의</u>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 -----. 1. ----- <u>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 및 민간부문의</u> 자료 ----- 1의2. <u>자료의 비식별화처리·자료간 연계 및 활용 지원</u> 2. ~ 4. (현행과 같음) 5. ----- <u>자료 활용과 관련된</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 ----- <u>각 호</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426